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12. 11.)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6	거창군 수입증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8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9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10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4
11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26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9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대산리와 월평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종래 남상면 월평리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 ⇒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대신리와 월평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정부3.0 추진에 맞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양방향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고료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게시판 게시자료 삭제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다. 전자우편ID보급 조항 삭제(제5장, 제14조·제1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양방향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고료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재정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변경함(안 제4조·제11조·제18조)
 - 행정안전부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 나. 지원대상사업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제17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안 제17조제1항·제2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운영비 명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함(안 제17조제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안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 나.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현행) 51개 조문 ⇒ (개정) 9개 조문

- 다. 서류 송달의 방법(안 제5조)
- 다.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에서는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2조)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25조문 ⇒ (개정) 15조문으로 축조
- 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던 것을 삭제하여 본문을 간결화함.(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 적용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2조)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하고 재 기재 하던 것을 삭제하여 본문을 간결화 함(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 개정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방안”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3. 주요내용

- 가. 전자수입증지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전자수입증지 사용 명문화(안 제3조)
- 다. 전자수입증지의 표시·규격·모양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과 변상책임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마.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기 위한 부칙 신설(부칙 제2조)
- 사.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폐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및 보관, 출납, 판매 등 종이 수입증지 관련규정 삭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방안”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징수방법을 변경함(안 제5조)
- 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 개선함(안 제6조)
- 다.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개선함(안 제7조)
- 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1의2)
 -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내·외 구분없이 ⇒ 300원으로 통일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사항 반영(14.11.07.개정)
- 마. 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12.10.개정) 별표의 개정사항 반영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5조(징수방법)에서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서는 기납부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2항에서는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관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개정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유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요구이유

- 거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업무로 2013년~2016년 기간 만료로 인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시니어클럽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길 138
- 다. 규모 : 사무실 90㎡, 교육장 75㎡(작업장 별도)
- 라. 사업내용 : 거창시니어클럽운영
- 마. 위탁대상 사무
 -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일자리 창출 및 보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 한 사항

바. 위탁방법 : 공모 또는 재 위탁

사. 선정방법 :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아. 소요예산

- 거창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관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일자리 개발·보급·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등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요구이유

-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계안정과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위탁기간 : 3년(이후 평가 심의를 통해 3년 이내 위탁기간 갱신)
 - ※ 연중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사업 추진
- 수탁기관(업체) 자격기준
 - 채용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 및 법인단체
 - ※ 연간 10개월 이상 5~10명 정도의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속적으로 채용 관리가 가능한 곳

- 수탁기관(업체) 선정
 - 공개모집(홈페이지를 통한 공고)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 사업내용 및 조건
 - 선정 업체와 협약체결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근로 임금의 50%(1인 월 50만원 이내)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연 5~10명 정도) : 신규 채용 시 공개 채용 원칙
 - 채용기간 만료 후 업체의 자체평가를 거쳐 계속 채용 장려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 협의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예산액 : 금 30,000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안정과 조기정착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다문화가족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현재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임사무(다문화가족법 제12조4항 5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위탁)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 「거창군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2. 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2.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제안이유

-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선(先) 보상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코자 함.

3. 주요내용

- 용도폐지 및 처분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단위: 원)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소 재 지	면 적 (m ²)				
토 지	62필지	303,383	5,112,292,850	‘15.12월	승강기전문 농공단지조성	거창군수

※ 감정평가 : 2015년 06월 03일 기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선(先) 보상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제안이유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이사장직무대행 이성복)
- 사업비 : 1,0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1,400	1,000	1,000	-	-	1,000	-

- 사업내용
 - 거창군장학회 사무국 운영, 거창군 인재육성사업 등
(장학사업,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중학생 거창인재스쿨 운영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거창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에 따라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2014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5종을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 세입 과목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면서 자체수입 감소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우리군이 해당됨.
- 따라서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였던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이 교육기관으로 지원될 수 없음으로 인해 장학회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함
 - 2015년 1,40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 출연계획안은 1,000백만원으로써
 - 사업내용은 장학회사무국운영 65백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450백만원(2015년 1,000백만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195백만, 중학생 거창인재스쿨 100백만, 방과후 학교지원 190백만원 등임
- ※ 참고로 거창군장학회는 2005년 12월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허가(경남도교육청 허가 제17-162호)를 받아 2009년 11월 장학기금 100억 목표를 달성하였고 2006년부터 매년 장학금 지원 사업만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10,565백만원임(기본재산 10,000백만, 보통 재산 565백만 / 2015년 4월현재)

- 거창군 장학회운영 세칙에 의거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제15조(교육 환경개선사업) 및 제26조 제6항(인재집중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출연금 뿐 아니라 자체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활동 등을 통하여 장학회사업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금번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9.

2. 제안이유

- 2016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3,085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 업 비 : 3,085천원(출연 예정금액)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3,085	3,085	3,085	-	-	3,085	-

- 사업내용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거창군 3,085천원)를 출연하는 것으로
- 금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